부설연구소 평가에 관한 지침

제정 2013.5.1. 개정 2014.6.1. 개정 2017.1.01. 개정 2019.1.16. 개정 2022.6.1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평가를 통하여 연구기능 활성화 및 대외적인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평가위원) 평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평가일정) 평가는 연 1회로 실시하며 익년도 1월에 평가를 한다.

제5조(평가기준) 각 년도 1월 1일부터~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.

- 제6조(평가방법) ①연구소장은 자체운영보고서 작성하여 매년 1월초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1.16)
 - ② 각 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 및 실사를 통해 연구소를 평가한다.
- 제7조(평가항목 및 배점대상) 평가항목 및 배점은 <별지 제1호>와 같다. (개정 2017.01.01. **2022.6.1**)
- 제8조(평가결과 반영) ①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운영경비 및 연구소실사용금액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
- ②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운영경비 및 실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하며 연속 2회를 받을 경우 해당연구소는 폐소 및 타 연구소와 통합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의 행ㆍ재정 지원등의 상세내용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폐지 및 해산)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소 폐지 신청 안을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 총장이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.
 - 1. 연구소의 사업이 목적과 위배될 때

- 2. 연구소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3.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할 때
- ②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본 개정내용은 2014년 부설연구소 평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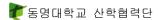
- 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본 개정내용은 2017년 부설연구소 평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본 개정내용은 2018년 부설연구소 평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본 개정내용은 2022년 부설연구소 평가부터 적용한다.



[별지 제1호]

연구소 평가 항목 및 배점 (개정 2017.01.01., 2019.01.16. <u>2022.6.1</u>)

1. 평가항목

대상항목	기준	단위 배점	최대배점	비고			
I. 연구소 운영 활성화(최대 10점)							
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최	횟수 당	1	10	- 전자결재문, 회의록			
연구소 홈페이지(콘텐츠) 운영	업데이트 5건 <u>당</u>	2	10	- 업데이트 내역서			
II. 연구활동 실적(최대 60점)							
행사개최 및 유치실적 (공동개최포함)	건당	5	10	- 전자결재문,팜플렛,초청장			
홍보물(정기소식지등) 발간	건당	3		- 홈페이지 게시자료, 발간물			
연구소 대외협력실적 - 산학연 교류협력체결 - 연구소명의 언론보도자료	건당	3	10	- 협정서 - 언론보도자료(스크랩)			
연구과제 수주실적(연구소장) - 간접비산정된 과제만 인정	공학 200만원 그외 100만원당	1		- 산학협력단 입금일자 기준			
특허출원 및 등록(연구소장)	건당	<u>3</u>	<u>50</u>				
논문게재실적(연구소장) -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이상	건당	<u>3</u>					
Ⅲ. 연구소 사업계획(최대 30점)							
사업계획서의 적정성	· 미흡/보통/우수	1/5/10	<u>10</u>	- 미제출시 ()점			
자체운영보고서 적정성	1日/王6/	1/ <u>0/10</u>	<u>10</u>	15 1 C C			
총점			100				

2. 평가결과 : 총4개 등급으로 산정

A	В	С	D
100~81	80~61	60~41	40~0

3. 평가활용

- 가. 자체운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D등급 부여
- 나. D등급은 경고조치하며 2회 연속 부여받을경우 공간배정 제외
- 다. 공간배정 제외 후 2회 연속 D등급 부여받을 경우 폐소
- * 공간배정제외 및 폐소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결정
- 라. 배정된 연구소의 연간 사용일수가 200일 미만일 경우 익년도 공간 배정시 제외